

의안번호	2215967
의 퇴 인	김우영의원
회 답 일	2026. 5. 13.
추계번호	26B0262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)	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1항) <u><신 설> 7.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</u>	의무규정
2	안 제21조의2(인공 지능 교육의 활성화) 신설	정부는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1. 인공지능 활용 능력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2. 허위정보 생성·유포의 방지, 저작권 침해 예방 등 인 공지능윤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3. 「디지털포용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디지털취약 계층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능력에 관한 교육지원 4. 인공지능 평생교육 체계 구축 5. 그 밖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3	안 제21조의3(인공 지능 활용능력 검 정) 신설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 상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인공지능 활 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(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)	•미대상 -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‘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’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 인력으로 수행 가능하므로, 개정안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제1차 인공지능기본계획(2026~2028)을 수립 완료하였으며, 기본계획에 ‘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’을 반영하는 것은 별도의 연구용역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 인력으로 수행가능하다는 의견임
2	안 제21조의2(인공지능 교육의 활성화) 신설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21조의3(인공지능 활용능력 검정) 신설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인공지능 교육의 활성화(안 제21조의2)

- 개정안은 정부가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‘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,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능력에 관한 교육지원, 인공지능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’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임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등을 위한 관련 사업의 내용 및 규모, 추진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는 관련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,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및 교육체계 운영 등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일부 사업들을 실시 중에 있음

[표 1]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 내용	2026
디지털역량 강화교육	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디지털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교육 추진 - (디지털역량함양지원) AI·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키오스크·금융·교통부터 AI 서비스 활용까지 경제·사회활동에 필요한 AI·디지털 역량 교육 제공 - (우리의 AI 러닝) 공공의 자원과 민간의 전문성 및 민첩성을 최대한 활용·총집결하여,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반 구축·확산	14,102
디지털배움터	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AI·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·디지털 교육 제공 및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- AI·디지털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 대상 키오스크·스마트폰부터 생성형 AI까지 다양한 AI·디지털 교육 제공 및 시설·장비 구축	38,121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(II-1)

□ 인공지능 활용능력 검정(안 제21조의3)

-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활용능력 검정의 방법·절차·내용·대상 및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개정안은 해당 내용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, 현 시점에서는 검정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,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,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된 민간 자격으로 인공지능 활용능력 평가 시험(AICE), AI 프롬프트 활용능력(AI-POT), AI 비즈니스 활용능력(AIBT), 인공지능 활용능력 등의 자격제도가 운영 중에 있음

[표 2] 인공지능 활용능력 평가 시험(AICE)의 주요 내용

주관 기관	자격 등급	자격 종류	시험 방식
KT, 한국경제 신문	Associate	공인민간자격	100% 실기 평가(파이썬, 제한적 오픈북)
	Junior	등록민간자격	100% 실기평가(노코딩 AI)
	Basic	등록민간자격	100% 실기평가(노코딩 AI)
	Professional	등록민간자격	100% 실기 평가 (파이썬, 제한적 오픈북)
	Future(1,2,3급)	등록민간자격	100% 실기평가(블록코딩)
	Generative(1,2급)	등록민간자격	100% 실기평가(생성형 AI)

자료: AICE 홈페이지 내용 참조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